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280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민호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04.12.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5. 19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이원천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택임 차권자	2020.10.07.	150,000,000		2020.10.07.	2020.09.09.	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 이원천)	전부	권리신고	주택임 차권자	2020.10.07.~ 2022.12.26.	150,000,000		2020.10.07.	2020.09.09.	2025.5.1.	
<p><비고></p> <p>이원천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2. 11. 17.임</p> <p>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 이원천):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임차인 이원천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을구 순위 11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인서가 제출됨)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280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5-18

리마빌

디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10번길 41-1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

다세대주택

1층 11.44㎡

2층 162.13㎡

3층 162.13㎡

4층 162.13㎡

5층 162.13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 302호

철근콘크리트조

39.9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5-18

대 323.7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323.7분의 21.613

감정평가액

147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1.28

147,000,000

14,700,000

2회

2026.03.11

102,900,000

10,290,000

3회

2026.04.22

72,030,000

7,203,000

4회

2026.05.27

50,421,000

5,042,100